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▣ 제안이유

○ 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의 융자금 대부신청 규정 중 연대보증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농가소득금고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.

▣ 주요골자

○ 융자금의 대부신청 완화 (제9조)

융자금 대부신청시 당해 동 거주자로서 2명 이상의 연대 보증인 규정을 "서구 관내 거주자로서 1명"으로 개정하여 융자금 대부신청 규정을 완화

▣ 검토보고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, 행정 간소화와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

○ 저소득농가의 융자금 대부신청 규정 중 연대보증제도를 "**당해 동 거주자로서 2명 이상**"을 "**서구 관내 거주자로서 1명**"으로 규정을 완화하여 저소득 농가에서 농가소득 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아 자립기반에 이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 도모와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